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3
----------	------

제출연월일: 2023. 5. 4.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을 위해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팔청춘사진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방문객들의 이용도를 높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전 시행 및 수상자에게 상금·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나. 축제, 행사 참가자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광기념품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홍보단에게 홍보용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마. 이팔청춘 사진관 사용료 조정(【별표 1】)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67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5227호, 2023. 4. 10.)

라. 입법예고: 2023. 3. 27. ~ 4. 17.(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모전)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국 단위 기념품·관광사진·영상 공모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을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입금하여야”를 “입금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제6조에 따라 관광진흥”을 “관광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금하여야”를 “입금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를 “취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관광

기념품”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5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8장(제28조)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제12조의4 관련)

관광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이팔청춘 사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관 이용 : 1시간/무료 (인원수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이후 : 시간 당 5천원 (인원수 무관, 최대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관 이용 및 의상대여 : 2시간/1만원 (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이후 : 시간 당 5천원 (인당)
별별마당 (마을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 1만원 (기본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② <u>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u> 한다.</p> <p>1. ~ 7. (생략)</p>	<p>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 ----- ----- <u>마련해야</u> -----.</p> <p>② ----- ----- ----- ----- <u>수립해야</u>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u>추진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 ----- ----- ----- ----- <u>추진해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5조의2(공모전) ① <u>구청장은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국 단위 기념품·관광사진·영상 공모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u></p> <p>② <u>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u></p>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9조(관측활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4. (생략)

<신설>

제10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 수입금 관리) ① (생략)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관리)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측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1. (현행과 같음)

2. ---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 수입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입금해야 -----.

제11조(판매관리) ① -----

2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
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12조의4(사용료) ① (생략)

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제6조
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
는 일부 감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
금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
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해
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
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
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 기록·관리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사용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 관광진
흥 -----
-----.

③ ----- 입금
해야 -----.

제16조(해촉) -----
----- 경
우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사항) ① -----

--- 경우 -----

--.

② -----

----- 가입해야 --

한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③ (현행과 같음)

④ -----
----- 취재 -----

-----.

⑤ -----

----- 사용료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 -----
-----.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

----- <단서 삭제>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

----- 경우 -----
----- 해촉 -----
-----.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견청취 등) -----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경우 -----

-----.

제2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산-----

-----.

③ -----
----- 경우 -----

-----.

<삭 제>

<삭 제>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 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

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5.>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문화관광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성 명: 이혜연
- 연락처: (052)290-3693

【별표 1】

[현행]

사용료(제4장 제12조의4 사용료 관련)

관광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이팔청춘 사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관 이용 5천원 (기본 1시간) · 사진관 이용 및 의상대여 2만원 (기본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별별마당 (마을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 1만원 (기본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개정안]

사용료(제12조의4 관련)

관광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이팔청춘 사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관 이용 : 1시간/무료 (인원수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이후 : 시간 당 5천원 (인원수 무관, 최대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관 이용 및 의상대여 : 2시간/1만원 (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이후 : 시간 당 5천원 (인당)
별별마당 (마을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 1만원 (기본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